

행동지원전문가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행동지원전문가 자격증 1급과 2급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행동지원전문가’라 함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대학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제3조(구분) 행동지원전문가의 자격 등급 및 부여 자격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행동지원전문가 1급
- ② 행동지원전문가 2급

제4조(행동지원전문가 1급) 행동지원전문가 1급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5조(행동지원전문가 2급) 행동지원전문가 2급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에서 행동지원전문가 자격을 위한 해당학기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와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단, 학위취득예정자 중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인정 관련 분야)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한 관련 분야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심리치료 전공 응용행동분석 트랙과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학습 및 정서행동장애 교육 전공과 지적 및 자폐성장장애교육전공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또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전임교원의 경우 각 교원의 전공을 관련 분야로 인정한다.

제3장 직무내용

제7조(직무내용)

- ① 행동지원전문가는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인 종합복지관,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아동을 위한 병원, 사설치료센터, 기타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치료시설에서 사회성, 의사소통, 기타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개별 대상에 대한 기능행동평가 및 중재, 행동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가, 행동지도 관련 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을 수행한다.
- ② 행동지원전문가 자격증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행동지원 전문가	1급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유아·아동·청소년의 행동 적응을 위한 기능 행동평가 자문, 행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행동중재 효과 평가 및 자문,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행동 분석 및 지도 관련 부모 교육과 상담, 개별 행동지도 관련 전문가 훈련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
	2급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유아·아동·청소년의 행동 적응을 위한 기능 행동평가 수행 업무, 행동 지원 프로그램 시행, 행동중재 효과 평가,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행동 분석 및 지도 관련 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

제4장 자격 검정

제8조(검정기준) 행동지원전문가 자격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행동지원 전문가	1급	행동 지원 및 중재가 요구되는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계획·실행·평가 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응용행동분석과 긍정적 행동지원 이론 및 실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적응 지원 전문가, 행동 지원 관련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2급	행동 지원 및 중재가 요구되는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계획·실행·평가 할 수 있는 준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응용행동분석 이론 및 실제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적응 지원 전문가, 행동 지원 관련 사무 책임 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

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행동지원전문가 자격 검정은 1급은 서류 전형으로 시행되며
2급은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전형으로 시행한다.

② 2급의 경우, 서류 전형(1차)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전형(2차)에 응시할 수 있다.

③ 행동지원전문가 자격검정은 매년 2회, 하계 및 동계 방학에 실시한다.

④ 행동지원전문가 자격 검정방법, 검정과목,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내용 및 과목	합격기준
1급	서류 전형	- 관련 분야 박사학위 - 현장 경력 증빙 자료(2년 이상) - 또는 관련 연구 실적 증빙 자료(학술 논문 3편 이상) ※ 단국대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 대학원 전임교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위의 서류 대체	규정 제10조 만족
2급	서류 전형 (1차)	- 관련 과목 및 실습 이수 증빙 자료	규정 제10조 만족
	필기 전형 (2차)	- 응용행동분석 - 기능행동평가 - 발달장애(자폐성장애포함) - 행동 관찰 및 평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⑤ 자격시험 형태는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⑥ 검정과목 성적이 과목당 모두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된다.

⑦ 검정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7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으로, 다음 전형 시기에 검정
과목을 모두 재응시해야 한다.

제10조(응시자격) 행동지원전문가 자격 검정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1급	- 연령: 해당없음 - 학력: 박사학위(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 - 기타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행동 지원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행동 지도 관련 학술 논문 실적이 3편 이상인 자 2.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대학원 관련분야 전임 교원
2급	- 연령: 해당없음 - 학력: 석사학위 - 기타사항 1.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 석사과정 이수자: 장애아동 이해 관련 이론, 이상행동 및 발달심리 관련 이론,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이론, 응용행동분석 이론 및 실제, 행동 평가와 중재 관련 이론 및 실제, 연구방법 및 연구 윤리, 발달장애 관련 이론 및 실제, 정서 및 학습 장애 관련 이론 및 실제 등 2. 교과목 이수 시간: 총 270시간 이상 3. 실습 시간: 현장 실습 45시간 이상(현장 관찰 및 실습 과목 인정)

제11조(자격증 갱신 및 보수 교육)

-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다.
- ② 자격증은 매 5년 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 ③ 자격증 갱신 기산일은 자격증 발급 일로 한다.
- ④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5년간 25시간(50분 단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
- ⑤ 단국대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대학원 전임교원의 경우 보수교육 및 갱신의 의무가 없으며 재직 중에는 자격증에 대해 영구 유지한다.

제5장 자격 관리·운영 조직

제12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자격검정 운영위원회는 단국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행동지원 전문가 자격 관리·운영한다.

제13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특수교육대학원 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위원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5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특수교육대학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16조(업무 분장)

- ① 자격검정 관리 팀장은 자격검정 전반을 담당한다.
- ② 자격검정 기획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격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2. 원서접수, 시험 출제, 채점, 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3. 자격검정 출제 기준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자격검정 사업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5. 검정업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자격검정 관리 담당자
 - 1. 자격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3. 자격검정 시행(원서접수, 시험 문제 인쇄, 감독위원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합격자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보수 교육 및 자격증 갱신)에 관한 사항
 - 5. 합격 발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제정일) 이 규정의 제정일은 2017년 3월 1일이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심리적응전문가 자격 관리 ·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심리적응전문가 자격증 1급과 2급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심리적응전문가’라 함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대학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제3조(구분) 심리적응전문가의 자격과정 및 부여 자격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심리적응전문가 1급
- ② 심리적응전문가 2급

제4조(심리적응전문가 1급) 심리적응전문가 1급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5조(심리적응전문가 2급) 심리적응전문가 2급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에서 심리적응전문가 자격을 위한 해당학기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와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단, 학위취득예정자 중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인정 관련 분야)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한 관련 분야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심리치료 전공 특수아 심리치료 트랙과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학습 및 정서행동장애 교육 전공과 지적 및 자폐성장장애교육 전공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또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전임교원의 경우 각 교원의 전공을 관련 분야로 인정한다.

제3장 직무내용

제7조(직무내용)

- ① 심리적응전문가는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인 종합복지관,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아동을 위한 병원, 사설치료센터, 기타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치료시설에서 심리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는 개별 대상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소집단 심리 상담 및 치료, 심리 적응 관련 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을 수행한다.
- ② 심리적응전문가 자격증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심리적응전문가	1급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유아·아동·청소년의 심리 적응을 위한 개별 대상 심리 치료 및 상담, 소집단 심리 치료 및 상담, 심리적 지원 관련 부모 교육 및 상담, 개별 심리적응지도 관련 전문가 훈련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
	2급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유아·아동·청소년의 심리 적응을 위한 개별 대상 심리 치료 및 상담, 소집단 심리 치료 및 상담, 심리적 지원 관련 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

제8조(검정기준) 심리적응전문가 자격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심리적응전문가	1급	심리 지원 및 중재가 요구되는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적응 관련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실행평가 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특수아 심리치료 관련 이론 및 실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응 지원 전문가, 심리적응 지원 관련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2급	심리 지원 및 중재가 요구되는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적응 관련 중재 프로그램을 실행·평가 할 수 있는 준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특수아 심리치료 관련 이론 및 실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응 지원 전문가, 심리적응 지원 관련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 ① 심리적응전문가 자격 검정은 1급은 서류 전형으로 시행되며 2급은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 전형으로 시행한다.
- ② 2급의 경우, 서류 전형(1차)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전형(2차)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심리적응전문가 자격검정은 매년 2회, 하계 및 동계 방학에 실시한다.
- ④ 심리적응전문가 자격 검정방법, 검정과목,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내용 및 과목	합격기준
1급	서류 전형	- 관련 분야 박사학위 - 현장 경력 증빙 자료(2년 이상), 또는 관련 연구 실적 증빙 자료(학술 논문 3편 이상) ※ 단국대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대학원 전임교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위의 서류 대체	규정 제10조 만족
2급	서류 전형 (1차)	- 관련 과목 및 실습 이수 증빙 자료	규정 제10조 만족
	필기 전형 (2차)	- 특수아동의 이해 - 특수아 심리치료(이론 중심) - 발달심리(아동발달) - 진단 및 평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⑤ 자격시험 형태는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 ⑥ 검정과목 성적이 과목당 모두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된다.
- ⑦ 검정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7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으로, 다음 전형 시기에 검정과목을 모두 재응시해야 한다.

제10조(응시자격) 심리적응전문가 자격 검정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1급	- 연령: 해당없음 - 학력: 박사학위(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 - 기타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심리적응 지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심리적응 지도 관련 학술 논문 실적이 3편 이상인 자

	2.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대학원 관련분야 전임 교원
	- 연령: 해당없음 - 학력: 석사학위 - 기타사항
2급	1.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 석사과정 이수자: 장애 이해 관련 이론 및 실제, 특수아 심리치료 관련 이론 및 실제, 이상 심리 및 발달 심리 관련 이론, 상담 이론 및 실제, 심리 검사 및 평가 관련 이론 및 실제, 부모 교육 및 상담 관련 이론 및 실제, 연구 방법 및 연구 윤리 등 2. 교과목 이수 시간: 총 270시간 이상 3. 실습 시간: 현장 실습 45시간 이상(현장 관찰 및 실습 과목 인정)

제11조(자격증 갱신 및 보수 교육)

-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다.
- ② 자격증은 매 5년 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 ③ 자격증 갱신 기산일은 자격증 발급 일로 한다.
- ④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5년간 25시간(50분 단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단국대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대학원 전임교원의 경우 보수교육 및 갱신의 의무가 없으며 재직 중에는 자격증에 대해 영구 유지한다.

제5장 자격 관리·운영 조직

제12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자격검정 운영위원회는 단국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심리적응 전문가 자격 관리·운영한다.

제13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특수교육대학원 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위원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5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특수교육대학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16조(업무 분장)

- ① 자격검정 관리 팀장은 자격검정 전반을 담당한다.
- ② 자격검정 기획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격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2. 원서접수, 시험 출제, 채점, 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3. 자격검정 출제 기준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자격검정 사업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5. 검정업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자격검정 관리 담당자
 - 1. 자격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3. 자격검정 시행(원서접수, 시험 문제 인쇄, 감독위원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합격자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보수 교육 및 자격증 갱신)에 관한 사항
 - 5. 합격 발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제정일) 이 규정의 제정일은 2017년 3월 1일이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학습장애 · 난독증 · 경계선지능전문가 자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자격증 1급과 2급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라 함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대학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제3조(구분)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의 자격과정 및 부여 자격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1급
- ②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2급

제4조(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1급)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1급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5조(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2급)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2급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에서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자격을 위한 해당학기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와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단, 학위취득예정자 중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인정 관련 분야)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한 관련 분야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학습장애·난독증 전공과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학습 및 정서행동장애교육 전공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또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전임 교원의 경우 각 교원의 전공을 관련 분야로 인정한다.

제3장 직무내용

제7조(직무내용) ①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는 특수학급,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특수 교육지원센터, 사설치료센터, 병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타 장애 및 학습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치료 시설 등에서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진단 평가 실시 및 해석, 읽기·쓰기·수학 영역의 학업 평가, 읽기·쓰기·수학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육과 상담,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한다.

②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자격증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1급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을 지닌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실시,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을 지닌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학업 평가 및 교육, 학습부진 또는 위험군 아동·청소년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학업 평가 및 교육,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육과 상담,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관련 자문,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훈련 및 감독 등의 업무 수행
	2급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을 지닌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실시,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을 지닌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학업 평가 및 교육, 학습부진 또는 위험군 아동·청소년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학업 평가 및 교육,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육과 상담,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관련 자문 등의 업무 수행

제4장 자격 검정

제8조(검정기준)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자격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학습장애	1급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진단 평가 실시 및 해석, 학업 특성 파악을 위한 평가 실시 및 해석, 읽기·쓰기·수

·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학 영역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이론과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2급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진단 평가 실시 및 해석, 학업 특성 파악을 위한 평가 실시 및 해석, 읽기·쓰기·수학 영역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이론과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자격 검정은 1급은 서류 전형으로 시행되며 2급은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전형으로 시행한다.

- ② 2급의 경우, 서류 전형(1차)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전형(2차)에 응시할 수 있다.
 ③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자격검정은 매년 2회, 하계 및 동계 방학에 실시한다.
 ④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자격 검정방법, 검정과목,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내용 및 과목	합격기준
1급	서류 전형	- 관련 분야 박사학위 - 현장 경력 증빙 자료(2년 이상) - 또는 관련 연구 실적 증빙 자료(학술 논문 3편 이상) ※ 단국대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대학원 전임교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위의 서류 대체	규정 제10조 만족
2급	서류 전형 (1차)	- 관련 과목 및 실습 이수 증빙 자료	규정 제10조 만족
	필기 전형 (2차)	- 읽기 교육 및 평가 - 쓰기 교육 및 평가 - 수학 교육 및 평가 - 진단 및 평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⑤ 자격시험 형태는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⑥ 검정과목 성적이 과목당 모두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된다.
 ⑦ 검정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7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으로, 다음 전형 시기에 검정과목을 모두 재응시해야 한다.

제10조(응시자격)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자격 검정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1급	- 연령: 해당없음 - 학력: 박사학위(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 - 기타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학술 논문 실적이 3편 이상인자 2.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대학원 관련 분야 전임 교원
2급	- 연령: 해당없음 - 학력: 석사학위 - 기타사항 1.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 석사과정 이수자: 학습장애 읽기 평가 및 교수, 학습장애 쓰기 평가 및 교수, 학습장애 수학 평가 및 교수, 학습장애 진단, 학습장애 교수 및 학습전략, 학습장애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학습장애 사회성 및 행동, 학습장애 관찰 및 실습, 연구 방법, 관련 장애 이론과 실제 등 3. 교과목 이수 시간: 총 270시간 이상 4. 실습 시간: 현장 실습 45시간 이상(현장 관찰 및 실습 과목 인정)

제10조(자격증 갱신 및 보수 교육)

-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다.
- ② 자격증은 매 5년 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 ③ 자격증 갱신 기산일은 자격증 발급 일로 한다.
- ④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5년간 25시간(50분 단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단국대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대학원 전임교원의 경우 보수교육 및 갱신의 의무가 없으며 재직 중에는 자격증에 대해 영구 유지한다.

제5장 자격 관리·운영 조직

제11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자격검정 운영위원회는 단국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자격 시험 및 심사를 관리운영한다.

제12조(구성)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특수교육 대학원 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특수교육대학원 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위원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5조(업무 분장)

- ① 자격검정 관리 팀장은 자격검정 전반을 담당한다.
- ② 자격검정 기획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 시험 출제, 채점, 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출제 기준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사업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자격검정 관리 담당자
 1. 자격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행(원서접수, 시험 문제 인쇄, 감독위원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합격자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보수 교육 및 자격증 갱신)에 관한 사항
 5. 합격 발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제정일) 이 규정의 제정일은 2017년 3월 1일이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자격·관리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자격증 1급과 2급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라 함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대학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제3조(구분)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의 자격과정 및 부여 자격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1급
- ②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2급

제4조(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1급)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1급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2급)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2급은 단국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단, 학위취득예정자 중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인정 관련 분야) 제4조와 제 5조에서 규정한 관련 분야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장애인평생교육 전공 또는 직업재활교육 전공과 일반대학원 특

수교육학과 장애인평 생교육 및 복지 전공에 해당 하는 경우이다.

제3장 직무내용

제7조(직무내용)

- ①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평생학습센터,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원, 청소년수련원, 장애인단체 등에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욕구와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획, 운영,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운영, 관리,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프로그램평가,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 가족상담, 장애인교육진단평가, 평생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1급	장애인평생교육 운영 및 관리자로서 장애인평생교육전문기관 기획 운영 분석 평가의 업무,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습정보제공 및 상담, 가족 및 장애인상담, 자문 및 인적관리 등의 업무수행 등
	2급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교육환경 구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장애인 상담 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

제8조(검정기준)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자격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1급	장애인평생교육 운영 관리자로서 교육기관 기획·운영·분석·평가의 업무,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을 위한 연계방안 구축, 가족 및 장애인상담, 자문 및 인적관리 등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2급	장애인평생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교육환경 구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평생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장애인상담 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 ①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자격 검정은 1급은 서류전형으로 시행되며, 2급은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으로 시행한다.
- ② 2급의 경우 서류전형(1차)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2차)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자격검정은 매년 2회, 하계 및 동계 방학에 실시한다.
- ④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자격 검정방법, 검정과목,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합격기준
1급	서류 전형	- 관련분야 박사학위 - 현장 경력 증빙 자료(2년 이상) 또는 관련 연구실적 증빙자료 (학술논문 3편 이상)	규정 제10조 만족
2급	서류 전형(1차)	- 관련 과목 및 실습 이수 증빙 자료	규정 제10조 만족
	필기 전형(2차)	- 장애인평생교육론 -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 장애의 진단과 평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⑤ 자격시험 형태는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 ⑥ 검정과목 성적이 과목당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된다.
- ⑦ 검정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7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으로, 다음 전형 시기에 검정 과목을 모두 재응시해야 한다.

제10조(응시자격)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자격 검정에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1급	- 연령: 해당 없음 - 학력: 박사학위 - 기타사항 1.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학술 논문 실적이 3편 이상인 자
2급	- 연령: 해당 없음 - 학력: 석사학위 - 기타사항

	1.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 과목을 이수한 석사과정 이수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평생교육경영론,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장애인평생교육정책론, 지역사회재활시설론,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장애인권 및 성교육, 부모상담 및 가족지원, 전환교육,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직업상담, 성인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기초문해교육, 기초문해교육, 자립생활, 재활사례관리, 장애의 이해와 재활, 문화예술교육, 현장관찰 및 실습 등 2. 교과목 이수시간 : 총 240시간 이상 (8과목 이상) 3. 실습시간: 장애인 관련 현장관찰 및 실습 40시간 이상(재활실습 과목 인정)
--	--

제11조(자격증 갱신 및 보수교육)

-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다.
- ② 자격증은 5년 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 ③ 자격증 갱신 기산일은 자격증 발급일로 한다.
- ④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5년간 25시간(50분 단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자격 관리·운영 조직

제12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자격검정 운영위원회는 단국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자격관리·운영한다.

제13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특수교육대학원 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위원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5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특수교육대학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16조(업무 분장)

- ① 자격검정 관리 팀장은 자격검정 전반을 담당한다.
- ② 자격검정 기획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 시험출제, 채점, 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출제 기준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사업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자격검정 관리 담당자

1. 자격검정 시행 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행(원서접수, 시험문제 인쇄, 감독위원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합격자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보수 교육 및 자격증 갱신)에 관한 사항
5. 합격 발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제정일) 이 규정의 제정일은 2020년 3월 1일이다.

제2조(시행일) 이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